

수수료(제7조의5제6항 관련)

구분	금액
1. 기본수수료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등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이 운행안전인증 업무 처리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2. 인증심사비	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나. 인증심사비 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심사비의 산정 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한다.
3. 인증심사원 출장비	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나. 출장기간은 현장 시험에 필요한 일수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한다.
4. 제품시험 수수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 수수료
5. 시료 운반·조작비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